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80호
- 나. 제출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8. 22.
- 라. 회부일자 : 2024. 8. 22.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자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의회 보고(안 제7조)
- 마. 표창 등(안 제8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공모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및 자원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제정안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에서는 ‘공모사업’과 ‘담당부서’의 정의에 대하여,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담당부서 지정, 전담조직 별도 구성,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와 구청장의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상시 관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일정 요건의 사업에 대해 공모사업 신청 전 구의회에 보고할 것과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매년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피로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모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구는 공모사업과 구정 주요사업과의 연계성, 타 사업과의 중복·과잉투자 여부, 사후관리 방안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공모사업 신청은 지양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동안 국·시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이 이미 선정된 경우에는 구의회에서 구비 부담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었음.
- 의회에 예산편성 전 사전 보고를 하는 절차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권한¹⁾을 고려하면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사항은 아니며²⁾, 사전 보고를 통해 국·시·구비 매칭으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의회가 예산안 심의 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한편,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 사업부서의 부담가중 및 의욕저하 등을 이유로 구의회 보고시점을 신청 전이 아닌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이전까지로 완화해 달라는 부서의견을

1) 제47조 제1항제2호(예산의 심의·확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50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142조(예산의 의결)

2) 법제처, 의견 23-0237

제출하였음.

- 참고로 서울시 6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